

第301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查第1小委員會)  
(임시회의록)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6月23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계속)
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06)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15)
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信託法 전부개정법률안
29.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50)
33.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08)

3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발의)(계속) .....	12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용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13
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	17
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1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	24

(10시26분 개의)

○소위원장 주성영 지금부터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이은재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다.

○李恩宰 委員 새로 1소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배 또 동료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자제한법 부분은 박영선 위원께서 오셔야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오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하겠습니다. 난민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3.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난

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준비됐습니까?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주성영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황우여 의원님께서 2009년 5월 25일 날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 11월 24일 날 공청회까지 마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그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난민 등’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용어로서 난민은 아니지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인도적 지위’,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어떤 스테이트(state)를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착난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착난민이란 특정한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다시 정착해 가는 그러한 난민을 의미하는데 그런 부분도 규정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난민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 절차는 국내에 있는 난민뿐만 아니라 공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난민신청 하는 기간 동안에 국내 체류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난민신청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그리고 난민이 신청을 받을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등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민정책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난민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난민위원회의 결정에는 구속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고,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

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다음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도 출입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제정법률안의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현행 출입국관리법 8장의2에서 난민의 인정, 난민여행증명서, 체류허가의 특례 등 난민을 위해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같이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난민 등의 인권보장에 한계가 있어서 난민인정 등의 절차와 난민 등에 대한 처우를 하나의 법에서 규정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인들이 이러한 필요성을 제시했고 외교통상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사항별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난민의 정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호에서 난민은 난민협약에 규정된 것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 등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로 인해서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적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등을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난민의 정의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으로서는,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는 대체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일부 조문의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두려움’ 같은 이러한 표현을 ‘공포’라는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난민 정의조항과 관련해서 심의 사항으로서는, 이러한 정의를 출입국관리법과 같이 난민협

약 등을 원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정의 규정을 들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이 법률에서 직접 정할 경우에는 진술인들이 진술한 대로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민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6호의 경우에 이 부분은 난민협약과 같이 이중국적자나 다국적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정의 부분에서 '인도적 지위' 부여의 범위와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도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난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아니하지만 폭력이라든지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처벌 때문에 종전에 거주하던 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에 있어서는 난민신청 시 인도적 지위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심사 사항과 관련해서, 인도적 지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기보다는 '2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불합리적인 근거가 인정되는' 등 이러한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절차와 별도의 신청 및 심사·결정절차를 둘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인도적 지위를 인정할지 여부도 반드시 심사·결정하여 결정서에 밝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난민신청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법안에서는 난민신청자를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해서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 난민인정 불허결정이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자들을 난민신청자의 범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규정한 다음 법 전체에서 난민과 같은 이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대체적으로 법안의 내용과 같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도 난민신청자로 보자는 그러한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차규근 진술인의 경우에는 취소소송 계속 중인 경우에 난민신청자로 보는 것은 논리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심사 사항으로서는 '난민인정이 거부되어 소송 중인 경우'를 난민신청자에서 제외할 것인지, 그걸 이 법안에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체류보장 부분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 체류보장 문제는 난민신청 기각 후 소송계속자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으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까지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이고,

다음 심사 사항으로는, 난민신청이 기각된 후 소송계속 중인 경우 체류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난민신청이 기각된 기각자라도 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자와 같이 볼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지 않아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현행 출입국관리법 17조1항 등과도 이러한 범조문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와 관련해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있는 난민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심사 전에는 공항 등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 등에서 하는 경우에 4주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4주 이내에 난민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가해서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신청의 방식에 있어서는 구술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공항 등에서 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다만 그 기간은 단축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항 등에서 하는 경우에는 신속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명백히 남용적인 신청을 신속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사 사항으로서는 이러한 구술로서도 신청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공항 등에서 신청·심사를 하는 경우에 입국심사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4주가 아닌 7일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문제, 신속절차의 도입 여부, 그리고 이러한 난민 심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민판정관 제도를 도입하는 여부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절차적 권리의 보장 문제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열람·복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조사 및 관계 기관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대체로 열람·복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과정에서 녹음·녹취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 시 국고부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 검토사항으로서는 변호사 선임 국고부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서류 열람·복사의 대상·시기·범위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서류 열람의 필요성은 있지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 면접과정의 녹음·녹화 및 제공 도입 여부, 정보 유출방지 규정 신설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입증책임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그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조문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칙과 현실 간에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사항으로서는 입증책임에 관하여 규정을 들지 여부, 다음으로 행정청의 자료·수집 제공 의무를 규정할지 여부, 이러한 부분이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송환 금지 15쪽이 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난민 등에 대해서 몇 개 카테고리의 국가에는 송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종·종교 등 때문에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라든지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국가, 또 이러한 국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송환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송환 배제사유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 사항으로는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난민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고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까지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의 여부, 그다음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 명시한 이와 유사한 다른 대우 부분도 1984년 고문방지협약 외의 국제협약도 포함시켜서 이 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부분도 이 법에 규정할지 여부, 마지막으로 강제송환 금지의

배제사유도 규정할지 여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봤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난민인정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난민인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수정되거나 필요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사 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를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고, 다음으로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에서는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과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난민정책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난민위원회는 독립위원회로서 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하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정무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이의신청기관은 필요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대체적으로 제시했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있는 법무부에 설치·운영 중인 난민인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심사 사항으로는 난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와 하게 된다면 그 위원회의 권한을 이의신청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법안에 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으로 하는 굉장히 큰 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행법에 있는 난민인정협의회에 준해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소송관할 특례를 도입해서 2심제로 할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현재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을 하는 단계가 면접을 두 번 하고 소송을 세 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섯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안에서는 안 24조와 35조에서 난민위원회와 다른 유엔난민기구와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24조에서는 난민인정절차와 이의신청절차에 관련해서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35조에서는 여러 가지 난민인정절차에 유엔난민기구가 관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관여가 지나친 면이 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사항으로서는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 존중의무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이라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이 있겠고, 다음으로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협조 부분도 여러 가지 우리 정부의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 학력·자격인정, 가족결합보장, 귀화요건 완화 등 이러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지만 다만 출입국에 관련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대체로 이러한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사항으로서는 이러한 처우 외에, 37조부터 46조까지 규정된 처우 외에 재산권이라든지 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도 같이 규정할 것인지를, 다음으로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난민법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의료급여 관련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조 및 5조의2에도 불구하고 7조부터 15조까지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이 내국인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은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심사 사항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의료급여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결합 보장과 관련해서 법안에서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 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 사항으로서는 난민 등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여부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난민 등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에 대한 입국허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가족의 입국

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난민 귀화 요건의 완화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난민인정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두면 국적법 5조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적법에서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취업허가,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권 등을 난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으로서는 생계비 및 취업허가 부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진술인의 경우에는 통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권 인정의 경우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담, 체류·취업을 위한 난민신청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범위 및 적정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사 사항으로서는 생계비 지원 및 취업허가 이 부분이 있는데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생계지원'으로 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다음 교육권 같은 경우도 권리보다는 국가의 의무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난민인정이 거부되어 소송계속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의 규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이 계속 중인 외국인의 경우도 난민신청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난민과 동일한 그러한 처우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착난민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외 난민 중 대한민국으로의 재정착이 허용된 자를 재정착난민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외난민의 국내 재정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재정착난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사항으로서는 이러한 재정착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 및 적용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기까지 얼마나 준비기간을 뒤야 할 것인지 부분은 이 법을 시행하는 법무부의 의견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례·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통역대상 명확화 부분에 있어서 ‘면접 등의 과정’으로 원안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면접과정’으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고, 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민 신청의 경우 원안에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 당시 이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법원의 허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도 수정의견과 같이 이러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법에는 없습니다. 거것으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과 같이 거것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난민인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경우에 이러한 근거 규정을 이 법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김학재 위원** 간략하게 한 게 아니야, 30분 동안 한 거야.

(웃음소리)

○**소위원장 주성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영호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마는 잘 정리되고 아주 노력한 점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차분한 어조로 변함없이 보고해 준 데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 난민법을 독립된 법령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출입국관리 또는 이민 관련 법령에서 함께 규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난민법을 독립된 법령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보다는 출입국관리 또는 이민 관련 법령에서 함께 규정하는 나라, 영미법계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이 오히려 우리들 법제하고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하고 대법원에서 우리가 독립된 난민법을 가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냉정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에서만.

○**법무부차관 황희철** 저희가 현재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 절차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된 법안을 마련하는 게 뭐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래도 독립된 법안을 만들게 되면 국제적으로 우리 어떤 인권보호 수준이라든가 또는 난민에 대한 관심 내지는 그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국제적인 신인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대법원에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이 법의 취지인데,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다 난민의 지위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절차를 두게 된다면 출입국관리에서 전체 체계상 난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독립된 법안으로 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김용덕 차장님께서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웃음소리)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위원님들께서 난민법 제정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셔야 그다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저도 난민법, 지금 우리나라 국가위상이 높아지고 또 현실적인 가능성 이것도 있어서 난민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를 사실은 법무부가 주관해서 해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의원입법 형태로 나와 있지만 법무부가 종합적으로 더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정리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게 빨리, 시급하다고 하면 이렇게 논의해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서너 명 정도로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압축적으로 좀……

○**소위원장 주성영** 그건 제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우선 제가 이렇게 죽 들으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다음 소위…… 허영호 전문위원, 시간 날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정하지 않고, 이게 황우여 의원실에서 준비를 해서 낸 법안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주성영** 황우여 의원실하고 법무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잘 정리된 이 내용에 대해서 안을, 최종안을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만드십시오.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급한 법안은 아니지만 우리 법사위가 다음에 또 정기국회 앞두고 간사하고 위원장이 참석한 입법계획 회의가 있지요? 우리 전문위원단하고 법사위 입법, 국회 입법계획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주성영** 그때 경과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영호**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사실 법무부와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 얘기 내가 들었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이제 심의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해 놔는데 이게 심의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황우여 의원실하고 법무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최종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정리를 해 달라 이 말이오.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주성영** 그리고 대법원 의견도 듣고, 오케이?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주성영** 그렇게 해 주시고.

○**김학재 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선 이 법안 봤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김학재 위원** 대체적으로 봐서 어때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저희가 보니까 국가 재정 부담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치고, 그래서 우리 국가에 가능한 한 재정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많이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학재 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전부 지금 제출을 한 거예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제출을 했습니다.

○**김학재 위원** 법안 전체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김학재 위원** 그래요? 그것 맞아요?

○**전문위원 허영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래요, 내가 들었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난민판정관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결정해 주면, 그렇지요? 전체 내용에서 이것만 결정해 주면 안이 대체로 나오겠지요?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주성영** 우선 난민판정관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저희는 난민 업무에 관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영국의 케이스 오너(case owner)라든가 네덜란드의 디시전 메이커(decision maker)라든가 스웨덴의 디시전 메이킹 오피서(decision making

officer) 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난민인정 여부가 일반적인 그런 업무보다는 인권이라든가 해외 사례라든가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난민판정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미국이나 일본은……

○박영선 위원 유엔에 있지 않아요, 이게 유엔?

○소위원장 주성영 유엔은 뭐 난민고등판무관인가……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것은 유엔……

○소위원장 주성영 유엔이지요?

○박영선 위원 유엔에 있어요, 이것.

○법무부차관 황희철 현재는 1차 심사를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있는 6, 7급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좀……

○소위원장 주성영 오늘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난민판정관을 전문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난민판정관에게 이 법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임무를 줘야 될 것 같아, 임무를. 임무를 부여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법안을 한번 성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선 위원 이게 예산, 자격 뭐 이런 것들이 다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직을 늘리는 거면 안 돼요, 이걸. 거기 가서 또 검사 앉아 있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

○소위원장 주성영 그런데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런데 이것은 검사가 아니고요, 5급 직원들을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법무부에 개방직 그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논의하세요.

○소위원장 주성영 오늘 결정을 좀 해 줘야 이게……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알기로는 개별 국가에 무슨 판정관이 도입된 나라가, 많이 있어요? 없을 걸, 거의? 유럽의 한두 나라밖에는?

○법무부국적·난민과사무관 박재현 명칭이 그렇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전담을 하는……

○소위원장 주성영 혹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저도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런데 새로 이 난민법을 만드는 데 난민판정관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박영선 위원 이게 보통, 나는 연구 안 해 보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난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면 유엔에 보낸다고, 보통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유엔에서 난민이나 아니냐를 해 가지고 국가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차관 황희철 위원님, 저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판정관을 갖다 두자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차 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누구를 하나 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뽑아 가지고 1차 심사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선 위원 그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또 무슨 이것을 해 가지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난센스예요. 난민이 얼마나 많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뭐 특별히 사람을 많이 늘린다고 이런 게 이런 아니고 저희가 기재부라든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두, 서너 사람 정도를 두자는 그런 겁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난민이, 수요 예측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법무부차관 황희철 지금 수요 예측은 다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학재 위원 연간 한 3·400명 들어오네, 신청이.

○법무부차관 황희철 현재까지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한 600, 7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실제로 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인정한 사람이 250명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위를 부여한 사람은 137명이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어느 정도 난민신청이 들어오고 난민을 인

정할 것인지는 대충 우리가 예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두루두루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주성영** 예, 말씀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저는 이제 아까처럼 뭐 세계 13대 경제 부국이고 또 ODA나 DAC나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2015년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 기여를 15억 불을 잡고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 역할도 커져 가고, 특히 이렇게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이 주목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이 통계를 지금 죽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난민법이 이렇게 제정되기 전에도 이렇게 신청이, 지금까지 한 3300여 명이나 됐습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지금까지 합계가 3229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제정이 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좀 더 늘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늘게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사전에 그런 검증이나 뭐 이렇게 심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돌아가면서 뭐 동 서기나 면 서기, 그냥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달리 언어나 하여튼 그런 행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해 왔었던 것에 대한 통계,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또 다른 심사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어쨌든 직원을 늘리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담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아까처럼 신청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숫자들이 많아서 정치적으로 뭐 또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적별로 보니까 어느 나라는 302명이 신청해 가지고 110명이 인정됐는가 하면 어느 나라는 385명이 신청해 갖고 1명도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나라의, 미안마라든가 방

글라데시나 네팔의 그런,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격의 차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축적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런 부분은 법무부하고 이렇게만 논의가 됩니까? 기재부하고도 논의가 좀 됩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기재부하고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나 기재부에……

○**이정현 위원** 반드시 기재부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부담될 수 있는 재정 부분에 대한 것도 예측도 하고,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서는 난민판정관 제도 도입 문제를, 우리 박영선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감안해서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논의를 하는 것을……

○**박영선 위원** 외교통상부하고도 해야지요, 외교통상부.

○**소위원장 주성영** 외교통상부 비롯해서 하시는 것을 전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우리 소위 때, 한번 소위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를 정리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영호** 예.

○**소위원장 주성영** 그리고 오늘 심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황희철** 박 위원님께는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저는 설명하실 것은 없어요. 저는 이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사실은 이게 더 전공 분야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통상부하고 의논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출입국관리소 소관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출입국관리소장이라는 분이 개방적으로 돼 있으면 그것 먼저 지키세요. 거기가 전문적인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자리 자체가, 또 지금 검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먼저 지키시라고. 그 자리는 분명히 개방직 자리예요. 그러니까 다음 인사에서 그 부분을, 8월 인사에서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춘석 위원** 용어 부분인데요. ‘난민판정관’ 하니까 난민의 자격을 부여할지 안 할지를 심판하는 형태의 일종의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 업무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용어를 좀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볼……

○**법무부차관 황희철** 바뀌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이게 유엔에서는 판무관이라고 그러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판무관이라고 그러니까. 하이 커미셔널(high commissioner)……

○**李恩宰 委員** 지금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사실은 조금 전문성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아니, 그것은 좋은데 전문성이 없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막 해? 그게 지금 궁극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난민의 정의를 여기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분이 근무를 하세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계세요?

○**법무부국적·난민과사무관 박재현**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보통 한 3, 4년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환보직 체제 속에서는 전문성을 다 획득했을 시점에는 또 다른 보직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난민 관련된 전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춘석 위원** 짬뽕으로 하는 것이지, 뭐.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 용어는 저희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재 위원** 차관, 이 법안을 보면 상대적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의료 지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러니까 난민 인정이 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재 위원** 현재도?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청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주게 되면 불법 체류자들이 전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난민 신청이 하나의 불법 체류의

구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학재 위원** 맞아요. 그것을 우려해서 내가 지금 차관한테 질문을 하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어떤 나라의 하나도 인정이 안 됐다, 네팔 같은 나라. 이것은 분명히 불법 취업 목적으로 난민을 위장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신중해야 된다, 난민법 문제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나라들 보세요. 전부 못 사는 나라들에서 여기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인정 안 되는 나라들 보면 이걸 불법 취업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난민법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지금 북한의 탈북자가 2만 명이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시급한 문제는 북한 난민들이예요. 지금 이런 콩고민주공화국·스리랑카·방글라데시 난민도 난민이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면 북한 난민들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2만 명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처음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6개월 지나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법도, 물론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법무부에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너무 서두를 문제는 우리가 아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로 하고,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회의에, 한번 심사하면 끝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발의)(계속)
  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용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11시20분)

○소위원장 주성영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쟁점이 대체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 우리 이영진 전문위원 준비됐습니까?

○전문위원 이영진 예.

○소위원장 주성영 쟁점을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 새로 보임돼서 오신 위원님도 계셔서 간단히 쟁점과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함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 쟁점은 크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 임차인한테 인정해서 2년 플러스 2년, 4년까지 살게 하자는 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부분, 지금 계약 기간 내에 차임을 올릴 때 또는 새로 계약 갱신될 때 차임을 올릴 때 그 한도를 약 5% 정도로 정하자는 안,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은 관리지역·신고지역을 정해서 최고 가격을 정하든가 또는 권장 가격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차임을 받지 못하자는 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가 각 의원님들의 쟁점을 정리한 거고요.

지난번 소위에서는 박영선 의원님의 계약갱신청구권 안과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준선 의원님 안을 협의하여 가치중립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각 의원실 주무 보좌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쟁점에 관해서 토의를 했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였으나 입장 차가 있고 각자 의원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최종안은 단일한 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각 의원실에서 수정안을 만드셨는데요.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실에서는 종전 안에다가 과거 소위에서 나왔던 자가 사용 시 갱신요구거절 기능을 추가하는 안을 만들었고 그 수정안에 대한 조문은 14페이지 이하에 붙여놨습니다.

그다음에 박준선 의원님 실에서는 종전 관리지

역·신고지역 있던 것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또 관리지역 내에서는 종전 차임의 100분지 115 즉 1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초과 인상 금지 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위반시의 형사처벌조항은 지나친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두 수정안을 크게 쟁점을 비교해서 설명 드리면,

박영선 의원님의 갱신청구권 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박준선 의원님 안은 관리지역 안에서만 적용되겠고, 또 적용 대상 임대인은 박영선 의원님 안은 모든 임대인에 적용되는 반면에, 박준선 의원님 안은 관리지역 중 일정 금액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임대인으로 축소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쟁점으로서 인상을 제한 대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박영선 의원님 안에서는 갱신 계약에만 한정되고 또 박준선 의원님 안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 외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신규 계약도 적용하는 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안의 장점과 한계는 밑에 표시된 바가 많습니다.

이런 수정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주무 담당자들 또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7페이지 이하에 적혀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해양부 관계관과 토의한 결과, 법무부 측에서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차임 등 인상을 금지하는 안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등지역에만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갱신 도입 시 소급 적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신뢰보호원칙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소급 불인정 쪽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갱신청구권 행사 시의 차임 증액 범위에 관해서도 10~1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과 함께 또 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사유 중 아까 말씀 드린 자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길 염려가 있을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가서서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상한제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서 과거 89년도에 주택임대차 기간 연장 시 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도입 시에 임대료가 급등했다라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11페이지 양 의원님들 안의 쟁점 및 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두 안의 공통점은 전월세 가격 폭등에 대한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일정 비율의 전월세상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통되고.

차이점이라 하면 또 수정안에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에 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또 인정한다면 소급해서 할 것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계약갱신자만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까지도 보호 범위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시행지역을 전국에 할 것인지 특정지역에 할 것인지, 또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까라는 일정 차임액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차 관계에만 적용할 것인지 부분도 쟁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대안으로서 일용 1안, 2안을 적긴 했습니다마는 두 안의 각 핵심적인 사항을 인위적으로 지침을 정해 주시면 취합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쟁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지침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제 생각에는 오늘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든지 아니면 합의된 부분만 추려서 법제화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마냥 토론만 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느냐 이게 두 가지 쟁점인데……

○박영선 위원 먼저 얘기하세요. 나는 양보할 거 다 양보했어요.

○朴俊宣 委員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뭐 설명은 다 했으니까, 전월세상한제가

사실은 상당히 센 제도예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자는 안하고 그다음에 전월세상한제 하자는 그런 주장,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월세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고 위험 문제가 있으니까 특정지역만 하자는 안을 낸 것이 저희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문제 있어서 지금 수정안을 냈는데……

일단은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조건이 된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거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인정하는 거하고는, 사실 둘 다 인정하게 되면 그 범위와 그다음에 강도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월 이사철이 되기 전에 6월 임시국회에서 저희 수정안만이라도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영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령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상한제가?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바꾸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렇게 되면 약화되는 거죠. 지금 시행령에는 전국적으로 다 연 5% 이상 못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면……

○朴俊宣 委員 연 5%는 임대차 존속할 때 올리고 거고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박영선 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도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실행이 안 되냐면 2년 안에 계약할 경우에 5% 이상을 못 올리도록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데, 집주인들이 다 2년이 지나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朴俊宣 委員 법무부에서 한번 얘기 좀 해 봐. 이게 지금 우리 박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가?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5%로 상한을 정해 냈지만 결국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그걸 갖다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朴俊宣 委員 지금 임대차보호법상의 시행령에 있는 거 5%라는 것은 계약 존속 기간에 2년 안에 올리는 얘기고, 그거는 그 규제고.

우리가 지금 차임 상한제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럴 때 아닌가?

○박영선 위원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이 법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오히려 지금 있는 그 법조차도 더 축소하는 효과가 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朴俊宣 委員 아니, 지금 기존의 임대차보호법상의 5%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법무부법무심의관 김우현 법무심의관 김우현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내에 최초로 정해 놓은 보증금에 비해서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물가 급등이나 아니면 세금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최초로 정해 놨던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거의 증감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년 동안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박영선 의원님 안은 추가로 갱신 청구를 하면서 이게 2 플러스 2가 돼서 4년이 되다 보니까 최초 2년 계약을 맺어서 다시 갱신을 하지만 4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측면 때문에 분명히 금액을 올릴 것 이다라는 임대인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거를 5%에서 또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5%라는 것은 존속 기간 내에 경제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 5%를 제한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럴 때 기존의 종전 차임에 비해서, 제가 지금 수정안 낸 거는 연 15% 그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범위 내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박영선 위원 그게 그 얘기지.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00만 원에

전세 들어가 있는데 이걸 2년 안에 계약을 하면 2000만 원에서 5% 이상을 못 올리는 거고, 현행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년 지나서 계약하면 맘대로 올릴 수 있다고. 그런데 박준선 의원님 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과거에 전세가 2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을 할 거야?

○朴俊宣 委員 아니, 그거는 지금……

전세계약자가 박영선 위원님, 저랑 둘이 맺었잖아요.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인정하게 되는 부분은 계약자가 만약에 달라진 경우에는 차임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는데, 제 법안은 A랑 그랬으면 종전 차임에서…… B랑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종전 차임에서 15%를 못 넘긴다는 얘기에요.

○이춘석 위원 그럼 그걸 행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적정 가격은 얼마다?

○朴俊宣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요율로 정하는 거지, 요율로.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 종전 계약서가 이 B라는 사람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이춘석 위원 집 주인이 제시를 안 할 거 아냐, 종전에 얼마를 했다는 걸.

○박영선 위원 제시를 안 하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게. 그걸 어떻게 규율을 해?

○朴俊宣 委員 그거는 전월세 신고하고 하는 그런 종전 차임에 대한 관리제도를 우리가 전제를 하는 거죠.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고 지금……

○박영선 위원 그럼 만드나 마나 한 법이 되지.

○소위원장 주성영 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쪽에서는 못 받아들입니까?

○朴俊宣 委員 그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위헌이고……

○박영선 위원 그게 무슨 위헌? 위헌 아니야.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월세상한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박영선 위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니까요.

○소위원장 주성영 그럼 오늘 더 논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네.

○박영선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준선 위원하고 나하고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주성영 위원하고 바꾸려고 그러다 이거에

요. 바꾸려고 그러면 그것도 상한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나 계약갱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내 말은. 똑같은 거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둘이의 계약서가……

○**朴俊宣 委員** 아니, 우리는 차임에 대한 상한을 제한해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거고, 지금 계약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차원이지.

지금 그러면 박영선 위원님은 특정 관리지역에서 계약갱신을 인정한다면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는 나는 그건 양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계약갱신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박준선 위원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지금은 그때 한 얘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박준선 위원님의 주장대로라면 계약갱신을 하는 것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야.

○**朴俊宣 委員** 사실상은 그런데……

○**이춘석 위원**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박준선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박준선 위원님이 하는 주장대로 법을 만들면 저는 유연성의 논란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박영선 위원** 더 커지지, 그게.

○**이춘석 위원** 왜 그러냐면 자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이, 모든 특정 지역에 대해서 여기 몇 평짜리는 적정한 임대가격이 얼마다라는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5%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자유계약에 의해 체결된 부동산의 전월세 계약을 행정지침에 의해 어떤 형태든 그거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위험성의 논란은 사실은 우리 박영선 위원님이 말한 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朴俊宣 委員** 그게 왜 위험성이예요? 가격에 대한 공정 논리라는 것은 공정가격이라든가……

○**李恩宰 委員** 국토부 의견 좀 한번 들어보지요.

○**소위원장 주성영** 의견은 다 들었고, 그러면 논의가 오늘 더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박준선 위원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

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동일인이 계약했을 때는 이게 5%가 올라가는지 10%가 올라가는지 서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어 버리면 내가 이 계약서를 여기다 왜 줘. 내가 줄 필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통제하기 전에는 그 전 사람에 대한 계약서에 대해서 진의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어져요.

○**朴俊宣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통제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통제가 아니라 지금 국토해양부도 그렇지만 전월세 가격에 대한 그것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恩宰 委員** 기초자치단체에 다 신고하지 않나?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장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제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朴俊宣 委員** 아니, 신고제라기보다는 그 가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장 박상우** 예,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박영선 위원** 그렇지만 그거 갖고 법을 규율할 수는 없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2억에 전세 들어갔다 그래 갖고 등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등기를 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제3자가 못 뺄걸요. 그거 어떻게 떼. 그건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등기를 한 건데.

○**전문위원 이영진**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간략히 하기 위해서 박준선 의원님 안 그 부분을 좀 생략해 드렸는데요, 박준선 의원님 수정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페이지 5항에 종전 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정보제공 의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 경우에도 과거의 임차인이 얼마냐라고 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 그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할 때는 전세보증금액을 기재하는 그런 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이걸.



- 朴俊宣 委員** 뭐가 복잡해요?
- 박영선 위원**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무슨……
- 朴俊宣 委員** 아니, 상대방이 한 건 복잡하고 본인이 하면 단순하고……
- 박영선 위원** 아니, 이건 굉장히 심플하니까.
- 朴俊宣 委員** 뭐가 심플해요?
- 소위원장 주성영**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고……
- 박영선 위원** 이건 한나라당이 분명히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 준 것은 6월 달에…… 4월 달에 원래 하겠다고 그랬는데……
- 朴俊宣 委員**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누가 약속을 안 지켜요? 합의가 돼야지 통과시키지요.
- 소위원장 주성영**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지금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안이 나와 가지고……
- 朴俊宣 委員** 뭐가 엉뚱합니까? 뭐가 엉뚱해요?
- 박영선 위원** 하기 싫으면 관둬요. 다 한나라당, 싫으면 관둬요, 그냥. 왜냐하면 이것 전셋값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이것 안 하면.
- 소위원장 주성영** 그다음에는 이자제한법 하겠습니까.
- 朴俊宣 委員** 모든 책임을…… 지금 타협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한나라당 책임이에요?
- 박영선 위원** 타협안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朴俊宣 委員** 뭐가 엉뚱해요!
- 박영선 위원** 지난번에 속기록을 갖다 봐요, 속기록을 갖다 봐.
- 朴俊宣 委員** 뭐가 엉뚱해!
- 박영선 위원** 소리 지를 게 따로 있지.
- 朴俊宣 委員** 엉뚱하고, 뭐 약속 안 지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대표발의)(계속)

(11시39분)

- 소위원장 주성영**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자제한법 합시다.
- 김학재 위원** 그런데 잠깐요. 사실은 서민 입장에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게 상당히 시급한 법입니다.
- 소위원장 주성영** 그런데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 자체가 과거에 얘기했던 안하고도 얘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500만 원 과태료를 무니 어찌니 나는 이것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500만 원 과태료를 매기려면 그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 낭비가 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李恩宰 委員**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 노철래 위원** 일단 이자제한법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만하십시오. 다시 조정을 하고, 왜 다시 얘기를 또 해.
- 李恩宰 委員** 아니, 가만 있어봐. 끝났는데 다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말씀이 너무 과하신 게, 지금 박준선 위원이 어떻든 간에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한나라당이 안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붙이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할 필요도 없이 뭐하러 해! 설명할 필요도 없어!
- 노철래 위원** 자, 의사진행발언……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넘기고, 다음에 다시 더 협의하기로 하고 넘기고, 이자제한법을 지금 상정을 했잖아. 그러면 그냥 가자고. 자, 그만합시다.
- 李恩宰 委員** 그래요. 이건 다시 논의를 하는 걸로 해서 이미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세요.
- 박영선 위원** 지금 이게 한나라당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양가상한제하고 이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그건 못하지. 못 해. 어떻게 서민을 팔아 갖고서는 건설업자 배불리는 법을 갖다가 통과시켜.
- 노철래 위원** 박 위원님, 그만합시다.
- 소위원장 주성영** 자,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지

- 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발의)(계속)
- 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난번에……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목소리 하면 주성영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朴俊宣 委員** 어떻게든 서민들 지금 전월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박영선 위원**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좀 진지하게 해요, 진지하게.

○**소위원장 주성영** 자, 조용히 하세요.

○**박영선 위원** 저희가 다 양보했어요, 다. 하자는 대로.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딴 거 내놓으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李恩宰 委員** 아니, 뭘 양보를 했다는 거야.

○**소위원장 주성영** 이자제한법도 중요하고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李恩宰 委員** 말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정말? 공무원들한테 만날 거짓말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요.

○**박영선 위원** 내가 법무부로부터 얘기 들은 것도 있어요.

○**李恩宰 委員** 내가 다 이것 적어 놨어. 다음번에 한번…… 계속 할 거예요, 정말?

○**이춘석 위원** 그만합시다.

○**소위원장 주성영** 자, 이른제 위원님, 처음 오셨는데 좀 조용히 해요.

○**李恩宰 委員** 정도껏 해야지.

○**소위원장 주성영**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자, 조용히 하세요.

이자제한법 부분도……

○**李恩宰 委員** 어떻게 같이 일을 해? 도저히 말이야……

○**소위원장 주성영** 좀 조용히 하세요.

○**李恩宰 委員** 남이 말하면 픽픽거리고 웃기나 하고 말이야.

○**소위원장 주성영** 좀 조용히 하세요. 이자제한법 부분에 대해서는……

○**李恩宰 委員** 너무 교양이 없으니까 말이야 정말.

○**박영선 위원** 무슨 콤플렉스가 있으신가봐.

○**李恩宰 委員** 콤플렉스? 말조심해요! 말조심해야지.

○**소위원장 주성영** 좀 조용히 하세요!!

○**李恩宰 委員** 정도껏 해야지.

○**노철래 위원** 역시 목소리는 크네. 뻘네. 그렇게 진작 하지.

○**소위원장 주성영** 이자제한법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논의를 토대로 전문위원께서 추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자 최고한도를 현행 연 40%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으로서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현행 연 50%인 조항을 배제하고 이자제한법을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지난번 2회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있었는데 법리적인 면에서는 이자제한법만 개정했을 때 대부업과의 충돌 문제와 법 개정 시 해석상 혼란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이자율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이자율을 일원화해서 신속한 입법적 결단으로 서민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서민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 관련 규정이 함께 개정되는 것인데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이번 주 월요일입니다—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심사를 하지 않은바 있고 6월 국회에서도 심사하여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부업법상의 이자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5% 인하한 데 이어서 올해도 지금 시행령에 44%로 되어 있는 것을 39%로 인하하기로 하고, 2일 전인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이르면 6월 말경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정무위의 대부업법 심사 상황하고 그다음에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이자율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규정을 조금 더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면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율하고 대부업법하고 이자제한법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접근된 상황이지요?

○**이정현 위원** 지금 국무회의에서는 몇 퍼센트로 했다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예, 말씀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39%……

○**이정현 위원**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업법에는 최고상한을 50%정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44%였다가 5%포인트를 내려서 39%로 이제 6월 말경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러한 것을 추이를 봐서 앞으로, 저번에 정부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5%포인트씩 상황을 봐서 인하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단계적으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좀 물어봅시다.

39다, 30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수치를 갖고 마치 많이 깎아 주는 게 정의고 서민을 위한 것이고…… 그러면 30이 아니라 25나 한 10으로 하는 것이 더 정의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래서 나는 수치로 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39%…… 대부업 이용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말씀드리면……

○**이정현 위원** 아니, 대충…… 길게 하지 말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저번에도 소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부분의 부담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접근성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돈이 필요한데 금리를 많이 물고서라도 좀 소액이라도 빌려 보겠다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대체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등급에 있기 때문에 일반 제도권 은행……

○**이정현 위원** 아니, 서민들이라고 다 낮은 게 아니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다 낮은 건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예요? 30 말

고 39라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대개 자영업자들이 많고요, 회사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용객들이 숫자적으로 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지금 저희가…… 꽤 많습니다, 한 300만 명 정도.

○**이정현 위원** 300만 명이요? 300만 명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2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데 이용한 사람들, 이용객들이 300만 명?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서 요구한 만큼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돈은 필요로 하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자, 은행은 이용할 수 없고 300여만 명이 돈은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은 서민이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래서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李恩宰 委員** 그런데 대부업체 이자를 39%까지 하는 건 나는 이걸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이춘석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래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이자제한법 대상이 아니라 대부업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렇습니다, 예.

○**이춘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은행 같은 데는 사실은 이자가 별로 안 높으니까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구분되잖아요. 그 경우에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데에서 대부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 프로티지하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 프로티지하고 대강 파악해 놓은 것……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 법체계가 이자

제한법에서 대부업법을 특별법 취급을 해 놔 가지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건 대부업법……

○**이춘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훨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건 이자제한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업법……

○**이춘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업법의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이자제한법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적용되지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지금 논의가 제가 알기로는……

○**이춘석 위원**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자제한법 따르지도 않거든. 아무 의미가 없거든, 사실은. 더 독한 놈들인데 이것들은. 몸을 뺏어 오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일단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정현 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요. 말하자면 아까 신용도 별로 없고, 돈은 급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생활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신용…… 은행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은행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거기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면, 이제 돈을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받았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약하다 보니까 연체를 할 경우도 많겠고, 그러면 그 연체를 갚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소득도 작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악순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정현 위원** 또 은행에서 빌릴 수 없다고 한다면 또 그 밖의 다른 데서 당겨 와야 되고 또 당겨 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금융 부문에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은행에서 취급을 많이 하게 되

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정했다는 대부업 39%로 지금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연체이자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포함입니다. 모든 이자,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이춘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네, 연체이자율을 포함해서 39%면, 실제 관행상으로 비춰 본 면에서는.

○**朴俊宣 委員** 외국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李恩宰 委員** 굉장히 높은 거지요, 지금.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 금리나 이런 것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됐는데 사금융, 이런 대부업체만 외국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으니까 그걸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금융 부문에서 보면 양극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좋아지시는 분들은 계속 좋고요, 나빠지는 분들은 나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 쪽에서 이자제한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저희 정부 생각은 은행에서 새희망홀씨라든지 이런 저금리 서민금융지원책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재정 쪽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재정자금을 투입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자제한을 줄여 가지고 그분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이 그나마 이용하던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빨리 정상적인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고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연체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 입법적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입법적 결단을 하더라도 이제 대부업법하고 관계가 먼저, 또 같이 정리가

왜야 이게 입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우리 김용덕 차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업법에 벌칙규정이 있어요. 처벌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렇습니다, 예.

○**소위원장 주성영** 이자제한법에는 없어요. 이자제한법에다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최고이자율에 대한 입법적 결정을 내리면 이자제한법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이제 이자제한법에서 그 조항을, 대부업법하고의 법적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에다 벌칙규정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벌칙규정 만들면 그건 대부업법에……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부업법에 또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로** 예.

○**소위원장 주성영** 우리가 최고이자율하고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제한법에다 벌칙규정을 두면 대부업법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한 거지요?

○**전문위원 이금로** 그건 지금 개정 내용으로 문제 삼고 있는 7조와 관련해서 이자제한법 규정이 대부업법의 이자율에도 적용된다고 할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면 기본적으로 다시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위원장 주성영** 무슨 문제가 돼요?

○**전문위원 이금로** 그러니까 이자제한법은 결국은 대부업법 규정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인 대부업법을 이자제한법으로 과연 규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건 결국 이자제한법상의 이율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사인 간의 금전 대차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부업자라든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대부업법상의 이자율하고 처벌조항은 또 그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결국 상충되는 문제가 그럼에도 생깁니다.

○**김학재 위원** 아니, 그게 왜 상충이야?

○**朴俊宣 委員** 그걸 신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이자제한에 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일반법과

대부업법의 특별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자제한법의 기본법이고 대부업법은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을 할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시당초부터 법이 잘못됐다고, 그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죄송합니다만 대부업법만이 아니고요, 그 밑에 대부업 및 금융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적 판단이었는데요, 법무부장관께서도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논의하신 내용이 ‘이건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속기록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여기서 이자제한을 일괄적으로 하고 거기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의 어떤 대부업자에 관련된 규제라든가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법률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이자제한법에서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자의 조항을 뒤서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둔 건…… 여기보다 낮게 한다든가 더 강한 규제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자제한법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을 거기다 둬서 인해서 가지고 사실은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우리 주성영 위원장처럼 그렇게 이자제한을 낮추고 처벌규정을 두고 한다면 그건 일반법하고 특별법의 문제가 아니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법에 의해서 충돌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법체계상으로는 이자제한법이 그래도 일반법일 텐데? 그런데 일반법으로 특별법을 강제한다?

○**전문위원 이금로** 전문위원이 한 말씀 올리면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자제한법이 마련된 이후에 나중에 대부업자들을 양성화시키면서 대부업법을 만들면서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항을 뒀기 때문에, 연역적으로는 대부업법상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의 특별법적인 조항이 뒀기 때문에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문제 제기가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춘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이자제한법을 제한해서 강제시킨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면 이거 논의할 이유가 없잖아.

○**이춘석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움직여야지,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다르고 이자제한법의 대상이 다른데, 사실은 대부업도 이율을 못 하는 개인 간의 거래를 이거 뭐 자꾸 낮춰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소위원장 주성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지금?

○**이춘석 위원** 이것 빵 프로로 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헛논의를 하는 것이 되는 거야.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대부업법하고 동시에.

○**김학재 위원** 전문위원 말이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부업법 규제 대상하고 이자제한법 규제 대상이 다르잖아, 지금.

○**전문위원 이금로** 다릅니다, 예.

○**김학재 위원**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지금……

○**전문위원 이금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김학재 위원** 돈 빌려 줬을 때 규제하는 법이고,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자 아닌 일반인이 지금 사채놀이 할 때 규제하는 법 아니야.

○**전문위원 이금로** 예.

○**김학재 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을 각자 둔다고 해서 무슨 상충 문제가 생기나?

○**전문위원 이금로** 아니, 지금 그걸 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대부업법까지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자제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니까 이게 이자법을 바꾸어 가지고 대부업법을 규제하려는 게 목표 아니야, 지금?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자제한법에는 대부업자가 못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전문위원 이금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게……

○**박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 대부업자가 안 들어가는데 처벌규정을 둔다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춘석 위원** 개인 간 거래는 처벌할 수 있겠지요, 대부업법 대상이 아닌.

○**박영선 위원** 개인 간 거래?

○**이춘석 위원** 예.

○**朴俊宣 委員** 아니, 대부업자도 처벌할 수 있지, 이 법으로.

○**소위원장 주성영** 우리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말이지요. 우리가 이자제한법에 최고이율을 규율해 가지고 대부업법이 그냥…… 대부업법 이율은 높은데,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법무부차관 황희철** 제가 좀 말씀을 올리면요.

○**소위원장 주성영** 예, 우리 차관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법무부차관 황희철** 사실은 지금 이자제한법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대부업법에 등록을 안 하고 대부업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법이 돼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소위원장 주성영** 의견 말씀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등록 대부업자에 관해서만 이율을 높여서 제도권에……

○**김학재 위원** 그런데 미등록 등록자가 많아요.

○**소위원장 주성영** 김용덕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소위원장 주성영** 우리가 여기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낮추고 처벌규정을 두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규제를 받겠네, 이 법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그런 의미도 있잖아?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그런데 지금 미등록 대부업자에 관해서도 대부업에 관한 법률에 또 별도 처벌규정을 뒀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미등록 대부업자도?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이율은 이자제한법 이율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처벌규정에 의하면 별도 규정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처벌규정을 만든다면 처벌규정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朴俊宣 委員** 아니, 여기서 이자제한법에서……

○**법무부차관 황희철** 다시 말씀드리자면……

○**朴俊宣 委員** 아니, 잠깐만요, 차관님.

○**이춘석 위원** 대부업하고 이자제한법 같이 잡시다. 같이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해?

○**소위원장 주성영**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상임위에서 안 되니까……

○**朴俊宣 委員**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이런 취지를 갖다가 정무위에서 대부업법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되고……

○**이춘석 위원** 그러면 또 싸움나지.

○**朴俊宣 委員** 아니, 싸움을 하든 어쨌든 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미등록 사채업자들 등록된 대부업자들 여기서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등록이든 대부업자들 같이 처벌하자…… 그렇게 만약에 그 법규정을 만들었을 때 그 법규정이 지금 대부업법상의 이 이자제한법보다 이율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그 처벌규정이 있는데 그 처벌규정하고 그 규정을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고……

○**이춘석 위원**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대등한 법률, 같은 효력을 가진……

○**朴俊宣 委員** 신법우선의 원칙이지, 신법.

○**소위원장 주성영** 그렇다면 대부분 법원에서 고민하게 되겠지요. 법원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대부업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낮추고 처벌규정을 두면 법체계상 올라는 울 겁니다. 오고 그 감당은 법원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좋다면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아까 말씀 다 들었어.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 부분이 하나 이 법사위에서 논의하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갈 거냐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30%, 지금 나와 있는 안의 30%로 최고이자율을 모든 대부업자나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저희는 상당히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없애는 그런……

○**소위원장 주성영** 반대의견도 많더라고요.

○**이춘석 위원** 그런데 정무위에서는 왜 이걸 못 낮춰?

○**소위원장 주성영** 업자들 로비 때문에……

○**朴俊宣 委員** 그게 업자들 로비라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단계적으로 낮춰 가고 있는데

요……

○**이춘석 위원** 아니, 법으로 대부업법에서 이율을 낮춰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같이 맞춰 주면……

○**朴俊宣 委員** 안 맞춰 준단니까, 정무위에서 안 한다고.

○**소위원장 주성영** 자, 위원님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취지를 다 아실 테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최고이율을 낮추고 벌칙규정을 두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朴俊宣 委員** 냅시다.

○**박영선 위원** 정무위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소위원장 주성영** 이자제한법에 손대지 말고?

○**박영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정무위가 우리가 법사위에서 하는 거 월권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니까 월권이라도 하겠느냐는 거지, 지금.

○**朴俊宣 委員** 왜 그게 월권이요? 이자제한법을 논의하면서 법규정에서 하면 그것이 결국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소위원장 주성영** 이춘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석 위원** 저는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은데요, 법을 만든다는 법사위에서 직접적으로 대책되는 법이 있어서 효력의 논란이 있는 것까지 감행하면서 법사위가 하는 게, 다른 상임위면 모르니까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지만 그래도 법 전문가들이 앉아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책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싸움하자는 것밖에 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정무위원회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이유가 이렇다고 하면 맞춰 줘야지요.

○**김학재 위원** 지금 대부업자 아닌 사채 거래도 꽤 있잖아요?

○**소위원장 주성영** 많습시다. 그것도 처벌규정이 또 대부업법에 있다는 거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사채놀이를 하더라도 업이나, 아니냐……

○**이춘석 위원** 사채업자가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불법인 거야. 사채가 용인되지 않는 거야, 사실은.

○**이정현 위원** 의견들이 이렇게 갈려 가지고 이거 결론 낼 수 있겠어?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가지고 처벌할 경우에는, 지금 이자제한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이기 때문에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처벌할 경우에 문제가 업으로 하는 경우,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업으로 할 경우에 처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대부업법에서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사사로이 했는데 우연히 이게 25%가 넘었다, 20%가 넘었다 했을 경우에 그걸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두더라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업으로 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바로 대부업법에서 두는 규정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생겨서……

○**朴俊宣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할 때 사실은 김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만 처벌해야지, 그런데 그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대부업법에 있는 규정을 이리로 가져와서 여기서 규정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것이냐, 그게 남은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 사이에서의 미등록한 그런 경우에 처벌하느냐 이걸 우리가 쟁점이 아니었다고.

○**소위원장 주성영** 이자제한법 부분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마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12시03분)

○**소위원장 주성영** 의사일정 제5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요건을 위반한 선고유예 판결을 상고이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2쪽에 현행과 개정안, 법원에서 수정의견을 냈습

니다.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크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 재심청구의 사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하신 내용에는 ‘선고유예가 요건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고유예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동안 이게 양형 문제인지 법리 문제인지에 대해서 학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고유예 요건 위반을 상고이유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단서조항같이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에 역량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해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 나목에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목에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1쪽을 다시 보시면 만약에 입법정책적으로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추가 검토사항입니다.

경과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당시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63년 형사소송법 부칙에 있어서도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하는 입법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만 법무부에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법무부차관 황희철**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선고유예 남용 방지는 형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면……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고이유를 손을 대는 부분이라 사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여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 보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입법의 기본 취지가,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그래서 벌금 부분에 관해서만은 그래도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현재 상고이유의 운영 실태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내게 됐습니다.

○**朴俊宣 委員** 법무부는 의견이 뭐라고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이견 찬성한다는 취지……

○**朴俊宣 委員** 찬성이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예.

○**朴俊宣 委員** 전문위원님, 63년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2항 할 때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이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가 된 사건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예, 그렇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러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면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은 검찰에서 상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법을 바꿔 가지고 갑자기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됐지만 상고기각 판결 받아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상고사유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제대로 한 번 심사를 받아봐라 하면 엄청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그런 불이익한 변경은 일종의 불소급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참고로 이 상고이유의 개정 조항이 두 번 개정이 됐습니다. 61년도에 개정될 때도 이 부칙에 이렇게 달았고요, 또 63년도에 한 번 더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부칙사항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朴俊宣 委員** 그런데 상고이유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변경된 내용이 관련 재판받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된 거라면 적용을 해야겠지요, 소급 적용을. 그런데 불리하게 적용된 거라면 그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불소급의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차장님 어떠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관한 규정인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까지, 부칙 경과규정까지는 깊은 검토는 못 했고요.

○**朴俊宣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검토에다가 경과규정 넣어 놔잖아요. 전문위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그렇습니다. 입법례를 따라서 61년도, 63년 개정 당시에도 똑같이 했고, 왜냐하면 54년도에 형법 개정할 때 상고이유가 열여섯 가지였고요……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그때 할 때 그 상고이유가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로?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참고로 54년도에는 상고이유가 총 열여섯 가지였고요, 7년 후인 61년도에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네 가지였습니다.

○**朴俊宣 委員** 추가된 거예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네 가지로 줄었습니다. 61년도에 줄었고 63년도에는 그 네 가지가 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줄었다든가 그러면 피고인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그것이 유리하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그런데 61년, 63년도 상고이유가 줄어든 부분은 검사 입장에서 유리한 상고일지 피고 입장에서 유리한 상고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고이유가 줄어든 것이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소송법에서는 소급효라는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인 경우에는, 해당 그 절차가 시행 중인 당시에 이 절차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에 비춰 보면……

○**朴俊宣 委員** 절차에 관련된 것은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그런데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헌법 판례가 기간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소급효가 가능한 걸로, 소송법에 있어서도 소급효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朴俊宣 委員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가지고 검사든 누가 상고를 해서 상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안 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상고사유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냐 이거예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그런데 이것은 시행 시기를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로 이렇게 주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朴俊宣 委員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요.

○이춘석 위원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원칙적인 얘기인데요. 선고유예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서 넘어가면 우리 법사위가 지켰던 룰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특히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형법 개정이나 형사소송법의, 일반법의 개정은 제가 법사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이건 기본법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자 하는 게 일관된 우리 법사위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도…… 내가 만일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을 개정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이게 다 들어가야 합니다. 법무부의 논의가 필요하거나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게, 이게 깨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법사위가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룰이 일반 보통법, 하여튼 기본법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서 하자는 게 일관되게 가져온 룰인데 뭐 이런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룰 자체가 깨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 부분은…… 기록에 남겨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특히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낼 때 그런 말씀을 앞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안에서 전부 논의가 들어가서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민법이나 상법이나 다 통과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시 검토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전문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하다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일단 확실히 해야 될, 필요한데요 일단 경과 규정이 없어도 현재 대법원에서 항고 중인 것은 다 이 신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주성영 신법이 적용되는, 이게 63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 수정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내가 하나 뭐 질의할게 있어요.

이 양형 관련 상고 사유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박영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보통 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러면 그 중간은 어떻게 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중간은 지금 현재에서는 상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고유예 요건 중에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되는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양형의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양형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야지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하는 요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가지고 2003년도에 대법원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견해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양형에 관한 사유냐를 가지고 양형에 관한 사유라는 부분이 다수의견이었지만 또 반대의견도 상당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다른 양형 조건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소위 말하는 선고의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 내지는 입법의 정책에 따라서는 방향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박영선 위원 괜찮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박영선 위원 그러면 중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않고 1년부터 10년 사이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상고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지금 법률 자체에 이미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의 정이 현저하지 않으면 선고유예를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법원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 그 부분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상당히 속한다고 봤습니다.

○朴俊宣 委員 시행 시기는, 시행 시기는 정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朴俊宣 委員 아니, 공포한 날부터 몇 개월 있다가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공포한 날 바로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기대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법을 어제 상정해서 오늘 소위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행 시기 같은 것은 6개월 정도로 해야 사람들이 알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즉시 시행할 이유가 왜 있는데……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시행 시기는……

○朴俊宣 委員 6개월 정도로 하세요, 6개월.

갑자기 이게 상고 사유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이 의아해 할 겁니다, 의아해 해.

형사소송법 보통 개정하면 바로 즉시 시행합니까?

6개월 정도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법무부차관 황희철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법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한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으로……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당황스럽지 않게……

○법무부차관 황희철 즉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朴俊宣 委員 그러니까 왜 즉시 시행을 해요.

○소위원장 주성영 코미디다, 코미디.

○박영선 위원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김학재 위원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박영선 위원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일반적으로?

○김학재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소위원장 주성영 그러면 정회했다가 본회의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9인)

김 학 재	노 철 래	박 영 선	박 준 선
이 두 아	이 정 현	이 주 영	이 춘 석
주 성 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한 규
전 문 위 원	이 금 로
전 문 위 원	허 영 호
전 문 위 원	이 영 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 관	황 희 철		
법 무 심 의 관	김 우 현		
국도해양부			
주 택 토 지 실 장	박 상 우		
주 택 정 책 관	이 원 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 제 윤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차 장	김 용 덕
---------------	-------